

보상계획 열람 공고

남면203호(신진선) 도로 확·포장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「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」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열람 공고하오니 본 사업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1. 03. 12.

태 안 군 수



1. 사업 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

- 가. 명 칭 : 충청남도 태안군수
- 나. 주 소 :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군청로 1

2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
- 가. 종 류 : 농어촌도로 정비사업
- 나. 사업명 : 남면203호(신진선) 도로 확·포장 공사
- 다. 사업규모 : 도로 확·포장 연장 968m, 폭원 8m

3. 사업예정지

- 위 치 :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신장리 121-13번지 일원

4. 열람기간 및 장소

- 가. 기 간 : 2021. 03. 12. ~ 2021. 03. 26.(14일)
- 나. 열람장소 : 태안군청 건설과 도로팀 (041-670-2901, 2902)
- 다. 의견제출 : 사업 및 토지·물건조서 관련 의견이 있는 주민 및 이해관계자는 열람기간 내에 이의신청서(의견서)를 서면으로 제출

5. 보상대상 토지 및 건물(지장물)

가. 태안군 남면 신장리 121-13번지 외 41필지 11,538㎡, 지장물 27건 등

※ 토지 소유자와 지장물건 소유자는 다를 수 있으며, 영농보상비는 실경작자에게 지급
나. 토지 및 물건조서는 열람장소에 비치

6. 보상방법 및 보상절차

가. 보상시기 : 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 후 개별통지

나. 가격결정 :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감정평가업자 3인 (같은법 제68조 제2항에 의거 시·도지사 및 토지소유자의 추천이 없을 경우 2인)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보상가격을 결정

다. 보상절차 : 토지등의 소유권자와 공공용지등의 협의취득 후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완료 후 계좌입금

7. 기타사항

가. 조서내용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추후 관계법령 및 관계기관 등의 확인을 거쳐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변경 또는 제외 될 수 있습니다.

나. 보상계획은 보상시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, 보상에 관한 구비서류 및 보상금 내역은 개별 통지합니다.

다. 보상계획에 대한 이의(의견)가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(의견제출)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라. 보상계획은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통지하나 주소나 거소불명으로 통지를 받지 못하신 분에 대하여는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조에 따라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.